의 료 질 향 상 위 원 회 규 정

제정 2008. 1. 17
개정 2012. 1 1 (2차)

제1조(목적) 이규정은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서 행해지는 의료 및 병원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과 환자의 안전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위원회는 "의료질향상위원회"라 칭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두어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(2012.1.1개정)
① 병원 전체 연간 질 향상과 환자안전 사협 기획 및 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
②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내용 심의, 결과분석, 평가, 환류등에 관한 사항
③ 임상 질 지표 선정 및 측정에 관한 사항
④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
⑤ 의료기관 인증, 병원신임평가 등 병원평가에 관한 사항
⑥ 질 향상과 환자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
⑦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
⑧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 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병원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
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한다
③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

제5조 (회의)
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수시로 개최한다.
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 (자료제출)
① 위원회는 부의사항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때에는 관계자를 출석 시켜 의견을 듣거나 해당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② 전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7조 (간사) 본 위원회는 간호과에서 주관하며 본 위원회의 기록 및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둔다.

제8조 (보고)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병원장이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0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